

노동정책연구  
2022. 제22권 제3호 pp.67-99  
한국노동연구원  
<http://doi.org/10.22914/jlp.2022.22.3.003>

연구논문

## 한국 노동시간체제의 성격 변화\*

황규성\*\*

한국의 노동시간체제는 시간정치, 집합행동의 논리, 시간배분 양식 등 노동 시간에 내재된 준칙을 기준으로 획일적 장시간 노동체제(1960년대~1990년대 말)에서 분절적 노동시간체제(2000년대 이후)로 전환했다. 획일적 장시간 노동체제에서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총노동과 총자본의 시간게임이 시간 정치를 규정했다. 노동자는 대부분 집합적 인내로 장시간 노동을 감수했다. 현재 노동시간을 통해 쌓은 소득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저축기반 주택취득이 노동시간을 배분하는 규칙으로 작동했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21세기에는 이중화의 논리가 노동시간체제에 침투하고 노동시간의 준칙이 바뀌어 분절 노동시간체제가 들어섰다. 시간정치에서는 생애노동시간의 배분을 둘러싼 노동과 노동의 대립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내부자와 외부자, 현재 노동자와 미래 노동자의 갈등을 낳고 있다. 집합적 인내의 기반이 무너져 내부자는 생애노동시간 연장과 필수노동시간을 줄이는 임금인상 투쟁에 나서는 반면 외부자는 현재 실노동시간을 늘려 생계를 꾸리는 개별적 인내가 행동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지배적인 시간배분 양식은 저축에서 부채로 전환되어 미래 노동시간을 현재로 끌어와 쓰는 부채기반 일부선취 모델이 정착되면서 내부자-외부자 분할을 강화한다. 분절 노동시간체제는 노동시간의 사회적 배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사람다운(decent) 노동시간을 고르게 실현하도록 노동시간체제를 재편해야 한다.

핵심용어 : 노동시간, 노동시간체제, 이중화

논문접수일: 2022년 4월 1일, 심사의뢰일: 2022년 4월 7일, 심사완료일: 2022년 7월 25일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20S1A5B5A16084240).

\*\* 한신대학교 연구교수(kyuseong.hwang@gmail.com)

## I. 서론

“세상사는 게 피로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로 시작하는 광고가 있었다. 30대 직장인이 포장마차에서 “내가 사표를 ... 내자, 내자, 사표 내자!”라고 한다. 그만둘 뜻은 미지근하다. 화면이 바뀐다. TV로 보고 있던 청년이 읊조린다. “부럽다 ... 취직을 해야 사표를 내지!” 직장인의 거친 생활과 그걸 바라보는 취업준비생이 연출하는 장면이 웃프다.

현실은 광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취업준비생은 일하는 시간에 목마른데, 직장인에게는 그 시간이 텅이다. 하루라도 일찍 벗어나고 싶지만 정작 더 일하길 원한다. 외국에서는 정년을 연장한다면 반대테모가 일어나기 일쑤인데, 한국의 노동자는 정년을 연장하자고 한다. 편안히 쉬지 못하고 돈벌이에 나서는 노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많다. 고용과 실업의 문제이지만 시각을 달리하면 노동시간에 관한 이야기다.

한국의 노동시간 연구에서 주류를 차지해 온 주제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었다. 경제적으로 저임금이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이근희, 1988).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결합이 오랫동안 한국 노동체제의 특징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중간이나 고임금 집단도 장시간 노동에 종사했고, 최근에는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시간 노동의 원인을 저임금에서 찾는 설명방식은 한계가 있다.

법·제도 측면에서 장시간 노동의 원인을 규명하기도 한다. 한국의 노동법 자체가 장시간 노동을 낳는 것으로 지적되었다(강성태, 2017; 박제성 외, 2011). 교대제·포괄임금제·노동시간 특례제도 등 제도적 요인을 강조하기도 한다(배규식, 2012). 법이나 제도가 장시간 노동을 낳고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노동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현상은 법·제도의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노동시간 관련 법·제도는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일부에 해당한다. 노동시간에는 법·제도 이외에 단시간 노동자의 증가와 같은 노동시장 현상과 문화적 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런데 장시간 노동을 열쇠 말 삼아 현재 한국의 노동시간에 다가서는 방식은 과거만큼 유효하지는 않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한국 노동자는 여전히 길게 일하지만 노동시간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 단시간 노동자의 증가, 초과노동시간의 단축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한국 노동시간의 현재 상태를 장시간 노동이라는 잣대만으로 포착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장시간 노동을 중심으로 전개된 선행연구는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노동시간의 건너편에 자리한 노동시간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장시간 노동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에는 노동시간이 회피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노동시간은 광고의 한 장면처럼 노동자가 서로 확보하려는 목표가 되었다. 노동시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동태적으로 변화한 현실은 연구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다.

노동시간의 사회적 의미 변화는 노동시간의 개인적·사회적 배분과 관련된다. 노동시간은 개인 수준에서 첫 일자리부터 은퇴에 이르기까지 생애에 걸쳐 배분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은 임금노동자와 취업준비생 사이의 배분처럼 사회적으로 배분된다. 현재 취업 중인 임금노동자의 실노동시간만으로는 노동시간의 총체적인 모습을 그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

노동시간의 의미와 사회적 배분은 노동법, 노동제도, 고용과 실업, 고용형태와 같은 노동 영역 ‘안’에서 충분히 해명되기 어렵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노동시간은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돈벌이에 할애하는 시간이다. 생존이라는 관점을 도입하여 노동시간을 노동 영역 ‘밖’으로 시야를 확장할 때 노동시간의 의미가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기존 연구와는 결을 달리하여 한국 노동시간에 흐르는 맥을 짚어보고 성격을 규명한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혈관이 흐르듯 한국의 노동시간에는 전체를 관통하는 맥이 있다. 한창 일할 나이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취업준비생은 그 장시간 노동에 기를 쓰고 들어가려고 하며, 늙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손이 노동시간을 휘저어 걸음으로 드러난 결과다. 이 글은 노동시간을 관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에 한 발 다가서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관 점

노동시간을 다루는 문헌은 노동시간체제(working time regime)라는 개념을 자주 쓴다. 하지만 사회과학 개념이 흔히 그러하듯 국어사전에 오를법한 합의된 정의는 없고, 그저 논자마다 다양하게 쓸 뿐이다. 그래도 일정한 경향은 있다. 이 개념은 주로 노동시간의 짜임새(arrangement)에 따라 국가를 유형화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제도에 주목하는 연구는 노동시간을 규율하는 법·제도의 특징에 따라 국가별 패턴이 달라진다고 한다(Figart and Mutari, 2000; Fudge, 2011; Rubery et al., 1998). 성별 노동분업은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Anxo et al., 2007; Fagan, 2004; Rubery et al., 1998). 생애주기 관점에서 이행노동시장 개념을 접목하면서 국가별 차이점을 설명하기도 한다(Anxo et al., 2007; Schmid, 2010).

노동시간체제는 나라별로 다양한 형태를 띤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 유연성과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유럽 각국의 노동시간체제를 유형화한 논의에서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연대주의적 성평등 모델(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자유주의적 유연성 모델(영국), 고진로 유연성 모델로 나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어디에도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Figart and Mutari, 2000). 노동시간체제 개념은 암묵적으로 노동시간에는 독특한 속성(properties)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노동시간체제는 별개의 구성요소가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린 하나의 뭉치로 존재하고, 행위자 다수가 이 체제에 포섭되어 있으며,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형” 노동시간체제라는 용어는 바로 이런 의미를 함축한다. 그런데 서양 논의에서는 노동시간체제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시간의 짜임새를 드러내는 용어가 나오지, 시간의 길이를 뜻하는 용어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 일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사회

과학의 지식을 생산하는 데에도 연구자의 관점이 드러나는 법이다(Rueschemeyer and Skocpol, 1996: 296).

반면에 한국 노동시간체제를 규정짓는 용어를 붙여보라면 대부분 ‘장시간’이라고 대답할 것 같다. 장시간 노동은 여러 요인들이 얽혀 있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강수돌(2013)은 장시간 노동체제가 노자관계, 생활세계의 화폐의존도, 양성평등, 사회적 지원, 가치관 변화, 노동동일시 등의 함수라고 한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서로 다른 요인이 결합되어 있고, 행위자 다수를 구속하며,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틀이라는 점에서 ‘체제’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한국의 노동시간체제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마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생계다. 역사적으로 노동의 성격은 변해왔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임금노동이 보편적이다. 노동시간은 기본적 생활수요(needs)를 충족해야 하는 노동자가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시간이다. 끼니 거르지 않고 고단한 몸 누일 방 한 칸 있으려면 임금노동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노동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시간과 여가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어느 정도 되면 노동공급이 뒤로 쫓기는 것도 현실과 먼 이야기다. 의지와 상관없이 행위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구속받게 되는 것을 상황강제(Sachzwang)라고 한다(Schelsky, 1965: 439-480). 노동자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임금이라는 노동의 가격이 아니라 임금노동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상황강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상황강제는 불한당도 길들인다. 이 글은 노동시간이 먹고사는 문제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발상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동자는 도대체 얼마나 오래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복잡해진다. 노동시간은 관찰하는 단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특정시점에서 일할 때 노동시간이 있고, 생애 전반에 걸친 노동시간이 있다. 전자를 횡단면, 후자를 종단면 노동시간으로 부를 것이다. 한국의 높은 노인 고용률은 종단면 노동시간도 길다는 것을 뜻한다. 노동시간은 관찰하는 기준에 따라 다시 실노동시간과 필수노동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실노동시간은 노동자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말한다. OECD 회원국을 비교할 때 흔히 인용되는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횡단면 실노동시간이다.

필수노동시간은 사회적 필요노동시간(socially necessary labour time) 개념을 생활수요 맞춤형으로 다시 해석한 것이다. 저작권자인 마르크스는 이 개념을 “주어진 사회의 통상적 생산조건과 그 사회에서 지배적 노동의 숙련 및 강도의 평균 수준에서 어떤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데 요구되는 노동시간”으로 정의했다 (Marx, 1962: 53). 이 개념은 자본가가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로부터 뺄 뺄다는 착취론과 잉여가치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노동자는 당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필요노동시간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시간인 동시에 노동자와 그 가구가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 시간이다. 이런 의미에서 필요노동시간 개념을 필수노동시간으로 살짝 틀어 ‘노동자와 가구가 생활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동시간’으로 규정한다.

필수노동시간은 실노동시간과 달리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가상의 시간이지만 개념적으로 설정할 수는 있다. 필수노동시간은 임금과 생활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가구마다 다르다. 20시간만 일해도 충분한 가구도 있고, 50시간은 뛰어야 하는 집도 있다. 그래도 사회 전반적인 평균치는 있을 것이다. 그 시간이 35시간이라면 35시간이 사회적 필수노동시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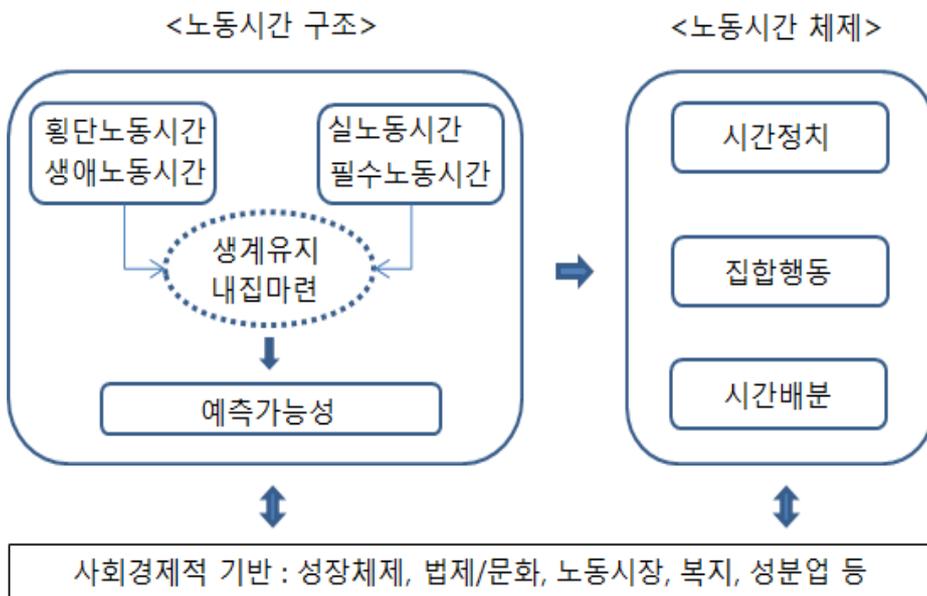
노동자가 노동시간으로 충족하려는 생활수요는 당연히 의식주다. 의식주가 인간의 생활수요라는 점은 모든 사회에서 같지만 한국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 바로 주택이다. 한국은 주거에 위계가 있어 월세-전세-자가의 주거사다리 구조에서 내집마련은 인생의 목표 중 하나이며, 주택소유는 중산층의 기준이다 (장세훈, 2007). 전세제도와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자가소유는 여전히 꿈이다. 2021년 9월에 시행된 의식조사에서도 2030 무주택 청년의 절대다수인 77%는 내집을 소유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2022). 더구나 결혼하는 자식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사회적 통념이다. 나아가 주택은 자산으로 미래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복지를 대체하는 기능도 있다(김도균, 2018). 한국에서 주택소유는 어엿한 생활수요다.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쇼어는 쓸 데가 많아져 과로한다는 일-소비 악순환 명제를 제기했지만(Schor, 1992), 한국에서는 소비의 자리에 주택소유를 넣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필수노동시간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노동시간과 내집마련에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한국의 노동자 대다수는

노동시간을 통해 생계를 꾸리고 내집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2. 설명 틀

시각은 시각일 뿐, 설명하는 방법은 아니다. 이 글이 한국의 노동시간체제를 설명하는 틀은 [그림 1]과 같다. 노동시간체제는 일정한 사회경제적 기반 위에 놓인다. 경제성장, 법과 제도, 노동문화, 노동시장 구조, 복지, 성별분업을 포함하여 선행연구들이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들을 모두 사회경제적 기반으로 넣는다.

[그림 1] 한국 노동시간체제 설명 틀



사회경제적 기반 위에 노동시간의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시간은 황단면 실노동시간, 생애 실노동시간, 황단면 필수노동시간, 생애 필수노동시간으로 구성된다. 네 가지 노동시간의 조합과 생활수요(생계유지+내집마련)의 관계가 노동자 가구가 직면하는 시간의 함수에 해당한다. 시간의 함수로부터 실노동시간과 필수노동시간 사이에 [노동시간 수치 = 실노동시간 - 필수노동시간]이라는 관계

가 성립한다.1) 노동시간 수지가 “0”이면 생활이 빠듯하고, 양수(+)면 윤택해지며, 음수(-)이면 고단하다. 노동시간 수지가 흑자인 가구는 실노동시간이 필수노동시간보다 길어,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저축할 수 있다. 노동시간 수지가 적자인 가구는 아무리 일을 해도 먹고살기 어렵다. 평균적인 노동시간 수지가 음수인 사회는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시간의 함수를 구성하는 실노동시간과 필수노동시간은 일정할 수도 있고, 변동이 클 수도 있다. 이른 나이에 취직해서 평생 9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면 노동시간이 대단히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다. 반대로 일이 들쭉날쭉하고 취업과 실업을 들락날락하는 경우에는 횡단면과 종단면 노동시간이 불규칙하고 얼마나 일해야 생활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그래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내집마련을 위해 드는 노동시간은 변동이 크다. 집값은 임금보다 변동 폭이 훨씬 크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함수에서 계수도 크고 불확실한 변수인 셈이다. 횡단면, 종단면 실노동시간이 짧아져도 집값이 뛰면 필수노동시간이 늘어난다. 노동시간의 함수에는 이러한 예측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노동시간의 구조와 예측가능성은 일정한 특성을 띠고 규칙으로 번역된다. 이 규칙이 노동시간체제의 성격을 규정짓는 열쇠가 된다. 노동시간체제는 ‘노동시간의 구조와 예측가능성에서 형성되어 노동자 대다수를 구속하는 준칙의 모음’이다. 이 준칙은 시간정치, 집합행동의 양식, 시간배분양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준칙의 모음이 노동시간에 스며있는 논리로 노동시간을 하나의 ‘체제’로 성립시킨다.

노동시간에는 정치가 흐른다. 자본주의에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는 형식에 그친다. 시장경제에서도 어떤 시장을 만드느냐는 문제는 정치적 과제이며(Lütz and Czada 2000), 시장에는 행위자의 권력관계와 상호작용이 작동한다(Fligstein and Calder 2015). 노동시간은 기본적으로 경제 현상이지만 경제로부터 자동적으로 연역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개입된다(Postone, 1993; Shippen, 2014). 시간정치에는 상이한 힘을 가진 국가, 노동, 자본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한다. 이

1) 노동시간 수지는 보통 실노동시간과 희망노동시간의 차이를 말한다(Lee, 2004). 이 글에서는 개인의 희망노동시간을 생존에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대체한다.

해와 권력관계의 짜임새에 따라 시간정치의 지형이 형성되고 일정한 규칙이 생겨난다. 이 시간정치의 양태가 노동시간체제를 구성하는 첫째 준칙이다.

둘째 준칙은 노동자 다수를 구속하는 행위규범이다. “집합행동의 논리”는 행위자를 둘러싼 환경과 이들이 취하는 행위의 규범을 포착하는 고전적인 개념이다(Olson, 1965). 이 개념은 무임승차의 문제를 다루면서 구성원 공통의 문제에 대처하는 행위자의 논리를 포착한다. 집합행동은 노동시간 분석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노동시간의 사회경제적 기반, 노동시간의 구성과 예측가능성, 시간정치는 노동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노동자는 그 요구를 번역하여 행위양식으로 수용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한다. 그 행위양식이 노동시간의 준칙을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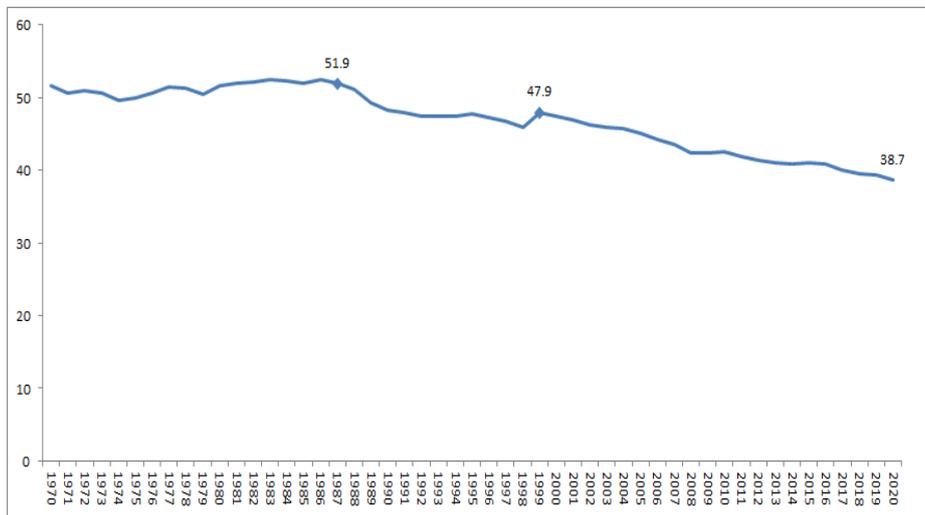
셋째 준칙은 시간 배분양식이다. 자본주의의 기본속성 중 하나는 시간을 나누고 팔 수 있다는 것이다(류동민, 2018; Scharf, 1988). 이 글에서는 노동시간의 가분성과 조직화를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대기시간 같은 노동시간의 내용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노동시간이 배분된다는 의미로 쓴다. 시간의 구성과 예측가능성의 조건에서 행위자가 시간을 배분하는 지배적인 양태가 출현한다. 노동자에게 관철되는 노동시간 배분의 지배적인 형태는 노동시간의 준칙을 이루는 또 다른 요소다.

노동시간에 내재된 준칙으로 노동시간체제를 규정하는 것은 그다지 새롭지도, 중요하지도 않다. 그러나 설명방식은 이론적·현실적으로 몇 가지 의미와 장점이 있다. 첫째, 이론적으로 노동시간을 (노동)가치론의 세계에서 꺼내 먹고 사는 문제에 접목한다. 노동시간을 순전히 경제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연결하면 구체적인 삶에 투영되는 시간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 나아가 필수노동시간 개념을 재해석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실노동시간 이면에 작동하는 시간의 논리를 드러낼 수 있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시간과 관련하여 행위자 대다수를 지배하는 규칙이 무엇인지를 포착할 수 있다. 준칙을 법·제도적 의미가 아니라 노동시간에 내재된 작동논리 내지 작동방식에 초점을 둬으로써 실생활에서 관철되는 시간의 논리를 해명할 수 있다. 셋째,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노동시간체제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노동시간은 경제구조에서 자동으로 연역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선택에

의해 정치적으로 주도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넷째, 핵심노동연령 계층의 노동시간뿐 아니라 생애노동시간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선행연구는 거의 전적으로 횡단면 실노동시간을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횡단면뿐 아니라 종단면 노동시간도 중요하다. 한국인의 입직연령이 늦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퇴직연령이 민감한 이슈인지,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유례없이 높은지를 설명하는 열쇠 개념으로 노동시간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간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 노동시간체제 개념은 일하는 시간의 양을 알려주는 수치 이면에 작동하는 논리를 포착한다. 이 논리의 변화를 통해 한국 노동시간체제의 변동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이 기댈 수 있는 정보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산업화 초기의 통계는 수도 부족하고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sup>2)</sup> 그래도 오래전부터 쌓여 온 횡단면 실노동시간은 논의의 준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면 대략 1987년과 1999년을 분기점으로 일정한 경향이 발견된다. 한국의 노동시간체제는 시기별로 작동하는 지배적인 준칙을 달리하며 형성·변화해왔다.

[그림 2] 한국의 주당 실노동시간 추이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21).

2) 1970년대 노동시간 통계는 기업이 법을 준수함을 보이기 위해 보고한 수치일 것이므로 실제 노동시간은 주당 60~70시간 정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윤진호, 2011: 239~240).

### Ⅲ. 획일적 장시간 노동체제(1960~90년대)

#### 1. 배경

##### 가. 사회경제적 기반

52시간에 이르던 한국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1987년을 기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ILO는 48시간을 장시간 노동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위기 이전 시기를 획일적 장시간 노동체제로 규정해도 무리가 없다. 장시간 노동체제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사회경제적 조건 위에서 성립했다.

경제발전은 요소투입형·조립형 생산과 수출주도 성장을 특징으로 했다. 수출경쟁력은 품질보다는 가격에 있었으니 낮은 생산비가 요구되었고, 국가는 임금을 박하게 설정했다. 국가에 의한 임금억제정책 → 저임금 → 수출상품의 경쟁력 유지 → 수출주도 공업화라는 일련의 관계가 성립했다(윤진호, 2011).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굳어지는 토대가 산업화에 있었다. 주력산업이 경공업 부문에서 석유화학, 기계, 전자, 철강, 조선 등 중화학 공업으로 옮겨져도 저임금과 장시간이 결합된 체제는 유지되었다.

노동집약적 산업화는 노동력 수요를 폭증시켰고 노동시장은 거의 완전고용 상태를 실현했다. 평생직장이 고용의 관행이어서 웬만한 직장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퇴직까지 일했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정은 1953년 5월 10일 제정 이래 36년간 48시간으로 유지되었다. 노동문화 역시 오래, 열심히 일하는 것이 노동자의 당연한 덕목으로 강조되었다.

한국 현대사에 변곡점을 이룬 1987년에 장시간 노동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분기점을 맞는다. 저임금과 장시간이 짝을 이룬 노동체제를 묵묵히 견뎠던 노동자는 이른바 대투쟁을 통해 드디어 폭발하게 된다. 1987~88년은 아마도 건국 이후 노동운동이 가장 고양된 시기였을 것이다. “1987년 노동체제”로 불릴 만큼 노동정치도 변했다(노중기, 2012). 노동자 대투쟁에 힘입어 1989년 3월 29

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노동시간의 법률적 규범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변경되었다.<sup>3)</sup>

노동정치와 법률의 변화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노동시장과 고용 측면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다. 노동운동은 아무래도 조직화가 용이한 대공장을 중심으로 고양되는 경향이 있다. 수출주도 성장의 경로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둔 대기업은 서서히 세계적인 경쟁력도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임금 지불능력도 쟁여두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응할 수 있었다. 임금을 깎지 않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조건도 일정하게 형성된 셈이다. 대기업 부문에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한 몸으로 얽혀있는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았고 지불능력도 크지 않았으며 기술혁신보다는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을 취하고 있었을 것이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결합된 체제를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것을 뜻한다. 부문에 따라 고용의 작동원리가 나뉘는 분절 고용체제의 씨앗이 이 시기에 배태되었다(정이환, 2013).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약 10년간 노동시간의 환경은 한편으로는 종래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요인들과 그 이후 시기의 요소들이 병존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이행기였다. 이 시기는 종전의 획일적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약간은 이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후에 출현한 신자유주의 시간체제의 중간에 위치했다.

#### 나. 노동시간 구조

횡단면 실노동시간에 관한 자료는 있으나, 아쉽게도 생애 실노동시간에 대한 정보는 없다. 평균 입직연령과 퇴직연령을 한꺼번에 알려주는 통계도 찾기 어

3) 그러나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관행은 남아 있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휴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연달아 내놓았다(근기 01254-1099, 1993. 5. 31; 근기 01254-11483, 1990. 8. 17; 근기 68207-2855, 2000. 9. 19) 1주일을 주말을 포함한 7일이 아닌 5일로 해석함으로써 주간 최장 노동시간을 평일 5일 52시간(법정기준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토·일요일 8시간씩 휴일 근로를 더해 최장 6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럽다. 다만 구조적인 경향은 언급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은 낮았다. 대학진학률도 낮은 데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흔했다. 여기에 더해 평생고용 관행으로 생애노동시간도 길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노동자 가구는 장시간 노동으로 번 돈으로 생계수요를 충족시켜 나갔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노동자 가구의 가계수지 흑자율은 1963~65년에 각각 -5.7%, -5.7%, -2.1%로, 벌어서 입에 풀칠하기도 벅찼다. 그 이후 흑자로 돌아서 1972년에 11.4%로 10%대로 올라섰고 1978년에는 20%에 진입했으며 1997년까지 20% 중반대를 유지했다. 35년간 가계수지 흑자율을 단순평균해보면 15.9%로 계산되고, 1980년대는 22.2%로 나온다. 평균 가계수지 흑자율을 대략 20%라고 치면 생계를 위한 필수노동시간은 실노동시간의 80%였던 셈이다.

이 시기 노동자 가구가 집을 마련하는 데 드는 노동시간은 산출하기 어렵다.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으로 통합)도 1986년부터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아쉬운 대로 1986년 주택매매가격을 100으로 놓고 추이를 살펴보면, 1987년부터 1991년 사이에 100.4에서 171.2로 급등했으나 그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1997년(157.4)까지 안정세를 찾았다(국민은행, 2022). 1990년대 주택 200만 호 건설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효과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노동자 가구는 대략 20%의 노동시간 흑자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셈이다.

필수노동시간을 측정하는 자료는 제한되어 있지만 노동시간의 예측가능성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횡단면 노동시간과 생애노동시간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시기 노동시간 구조의 중요한 특징이다. 한창 일할 때 횡단면 노동시간의 합계가 곧 생애노동시간이었다.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면 근로생애는 마감하는 것이었고, 설령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더라도 임금노동자 보다는 자영업자로 나타나는 것이 다반사였다. 따라서 [(퇴직연령 - 입직연령) × 임금 = 생애노동소득]이라는 등식이 성립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른 노동시장 진입과 평생직장 관행으로 생애노동시간은 거의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었다. 그 직장에서 언제 그만두게 되는지도 눈에 보였고 퇴직하면 다시 임금노동자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것도 뻔했다. 설령 중간에 고용이 단절되어도 완전고

용에 가까운 노동시장과 노동력 초과수요가 평생직장의 보완재이자 기능적 등가물 역할을 했다. 횡단면 장시간 노동과 종단면 장기고용으로 노동시간의 예측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필수노동시간 중 내집마련에 드는 노동시간은 산출하기 어렵지만, 가구가 적어도 내집마련에 드는 노동시간은 계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 2. 장시간 노동체제의 성격

### 가. 시간정치

이 시기 노동시간의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행위자는 국가였다.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국가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짝을 이루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자본의 이익을 실현하는 핵심적 기제이기도 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국가와 자본이 서로의 목표와 이익을 실현해주는 공통된 기제였다는 점에서 시간정치에서 지배연합을 형성하게 한 토대였다.

횡단면 노동시간과 생애노동시간의 일치라는 단순한 시간배분 구조와 높은 예측가능성의 조건에서 시간정치의 지형은 상당히 단순했다. 자본은 더 낮은 임금으로 생산비를 낮추고 더 긴 노동시간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득이다. 노동은 더 높은 임금으로 더 짧게 일하면 좋다. 노동의 입장에서 임금인상은 필수노동시간을 줄여 노동시간 흑자폭을 늘리게 된다. 여기에 더해 임금삭감 없이 실노동시간이 단축되면 필수노동시간이 더 줄어 흑자폭이 더 커진다. 이런 노동의 이익은 자본과 충돌하기 마련이다. ‘시간의 게임’은 노동과 자본 전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총노동과 총자본의 싸움이 지배적인 형태였다.

자본주의 권력관계는 기본적으로 자본으로 기울어 있다. 시간정치의 지형도 마찬가지다.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과의 시간게임은 이윤규모의 증감 문제였으나, 노동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장시간 노동체제가 들어선 시기에는 생존이 거의 전적으로 시장소득에 의존했다. 노동자의 생존투쟁과 결부된 ‘시간의 게임’은 풍요로운 시간과 생활수준 사이에 교환(trade-off) 체제를 성립시켰다. 시간 가난뱅이가 될수록 물질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토대로 형성된 국가와 자본의 지배연합에 노동의 강요된

수용이 노동시간의 정치를 규정했다.

강요된 수용은 노동자를 규정하기도 했지만 역으로 노동자의 연대를 가능하게 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한다. ILO가 1919년에 맺은 1차 협약은 임금인 아닌 노동시간에 관한 것이었다. 실 노동시간 단축은 20세기 노동운동의 상징으로서 노동자 전체가 연대할 수 있었다. 한국도 노동자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에서 예외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임금삭감 없는 실노동시간 단축의 깃발 아래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었다. 노동시간 법률개정에는 노동자 연대가 1987년 노동체제를 통해 거둔 결실 중 하나였다.

#### 나. 집합행동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에게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했다. 산업화 초기 영국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생존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의 노동자도 다르지 않았다(구해근, 2002). 노동자에게 요구된 것이 바로 뼈를 깎는 장시간 노동이었다.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이정표를 이룬 전태일의 분신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처절한 항거였다. 그럼에도 노동자 대다수는 장시간 노동을 무던히 견뎌냈다. 노동자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달가울 리 없지만 생계유지라는 상황강제에 처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물질적 생활의 향상과 장시간 노동의 교환관계를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행위가 다수를 점하면 집합적 인내가 된다.

집합적 인내는 몇 가지 조건 위에서 작동했다. 첫째, 시간의 구조와 예측가능성이 거의 모든 노동자에게 동질적으로 형성되었다. 큰 회사에 다니든 작은 회사에 다니든, 작업복을 입든 넥타이를 매든, 횡단노동시간과 생애노동시간이 일치하는 시간구조는 같았다. 생애경로도 마찬가지다. 일찍 직장 잡고 오랫동안 일하면서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고 자식 낳아 내 집을 마련하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는 길이 표준적 생애경로로 정착되었다. 다들 그렇게 살면 참아낼 수 있었다.

둘째, 노동은 장시간 노동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서서히 높아졌다. 1964년에 28.6%에 머물던 노동소득분배율은 1980년에 50.8%로 올라가고 1996년에는 62.8%에 이르렀다(한국은행 국

민계정).<sup>4)</sup> 임금소득도 점점 높아졌다. 1971년부터 1997년까지 10인 이상 비농 전산업의 연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은 7.4%로 계산된다. 특히 1970년대 후반과 노동자 대투쟁 직후 1989년에는 10% 중후반대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21).

셋째, 고유한 불평등 관리방식이 있었다. 시간게임의 결과는 갈라지기 마련이다. 장시간 노동으로 생계수요를 충족하고 남은 소득으로 주택 취득까지 성공한 가구가 있을 것이고, 전세에 머무는 가구도 있을 것이며, 근근이 입에 풀칠하는 가구도 있었을 것이다. 노동시간체제는 불평등 체제이기도 하다.<sup>5)</sup> 하지만 “승강기 효과”(Beck, 1986)가 나타나 생활수준의 평균적인 향상이 불평등을 덮는 역할을 했다. 1987년 노동체제가 노동자 간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긴장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 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1986~88년의 3저 호황이었다(정이환, 2013: 307). 불평등이 심해져도 나의 생활이 어제보다 나아지면 집합적으로 참아낼 수 있다.

#### 다. 시간배분

총노동과 총자본의 대립 상황에서 집합적 인내라는 행위규범을 장착한 노동자 대다수가 노동시간을 배분하는 방식은 저축이었다. 노동자 가구에게 저축은 일차적으로 생활수요를 충족하고 남은 임금소득을 쌓아 두는 것이지만 노동시간의 배분 차원에서는 색다른 의미가 있다. 쌓은 돈이 많으면 생애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은퇴 이후에도 돈벌이에 나서야 한다. 당시에는 특수직 연금만 있었을 뿐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은 1988년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노동자에게 저축은 생애노동시간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기제였다. 저축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택취득 노동시간은 줄게 되고 마침내 집을 마련하면 필수노동

4) 노동소득분배율은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자영업의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에 따라 수치가 다르다. 한국은행 통계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자본이윤으로 간주하고 계산한다. 여기에서 인용한 수치도 이 방식에 따른 것이다. 자영업자 소득 중 노동소득을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과 같다고 가정하는 경우와 2/3를 노동소득으로, 1/3을 자본이윤으로 보는 방식이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추세가 중요하므로 한국은행 통계치를 인용한다.

5) 물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주택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경우와 혈혈단신으로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게임에서 엄청난 불평등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상태를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실노동시간에 따라 필수노동시간이 달라지는 것이다.

저축은 국가, 자본, 노동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공통분모이기도 했다. 국가는 초기에는 외자를 통해 성장의 재원을 마련했으나 이후에는 내자동원을 위해 저축을 활용했다. 자본도 저축을 모아 투자의 재원으로 사용했다. 가구는 저축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내집마련의 교두보로 활용했다. 돈에 대한 수요가 크다보니 이자율도 높았다. 투자비용이 필요했던 자본은 이자를 높게 쳐주더라도 가게에서 돈을 빌려오면 미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가구의 입장에서도 이자율이 높으니 저축은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었다. 저축과 고금리는 삼자의 이익이 부합하는 우연한 계급타협 체제를 낳았다. 실제로 가게 저축률은 매우 높아 1987년부터 1993년까지는 20%를 웃돌았다(한국은행 국민계정). 가계수지 흑자율이 대충 20%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게는 쓰고 남는 돈을 대부분 은행에 넣어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빈털터리로 시작한 노동자 가구 중에서 장시간 노동을 통해 생계안정을 넘어 내집을 마련한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저축이라는 시간조절 양식이 널리 확산되어 대다수를 규정함으로써 ‘저축기반 내집마련’이 모델로 성립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산업화 초기부터 1990년대 말까지 유지된 획일적 장시간 노동체제는 시간정치에서는 총노동과 총자본의 대립, 집합행동에서는 노동자의 집합적 인내, 노동시간의 배분에서는 저축이 지배적인 양식으로 들어섰다. 이 양식에서 벗어나는 노동자는 거의 없었다는 의미에서 장시간 노동체제는 ‘획일적’이었다.

## IV. 분절 노동시간체제(1998~현재)

### 1. 배경

#### 가. 사회경제적 기반

경제위기 이후 IMF는 가방에 신자유주의를 담아 들어왔다. 노동부문에서는

유연화라는 이름표를 달고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가 도입되었다. 이때부터 1987년 고용체제에 잠재되어 있던 팽팽한 긴장이 툭툭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분단은 구조적인 형태로 뚜렷해졌다. 경제위기 전에는 예외적인 형태에 국한되었던 비정규 노동은 1/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확산되었다. 더구나 노동시장 유연화가 세계적인 추세였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비정규 고용이 기업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노동시장 밖에서는 장시간 노동체제를 지탱했던 요인들이 바뀌었다.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한국경제는 2000년대 이후로는 저성장 체제로 전환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은 3.6%에 그치고 있다(한국은행 국민계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점차 심해졌다. 물론 기업규모별 격차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점점 벌어져 기업규모 간 자본집약도 격차 확대 →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 → 임금격차 확대의 메커니즘이 본격적으로 작동했다(홍장표, 2016).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국경제는 부문 간 공유된 성장에서 이중경제의 경로를 밟아 왔다(정준호, 2017).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분리(decoupling)할 수 있는 부문과 여전히 양자가 결합된 부문이 병존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정체에 빠졌다. 1996년에 62.8%였는데, 2012년까지 62%를 넘지 못하다가 서서히 반등하여 2020년에는 67.5%에 이르렀을 뿐이다. 임금인상도 발걸음이 무뎠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비농전산업 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은 2.4%에 불과하다(한국노동연구원, 2021).

다른 한편으로, 경제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면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성찰이 일기도 했다. 일·가정 양립, 일·생활균형 등의 담론이 표출되었다.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표준 근로시간에 대한 법제가 바뀌었다. 2003년 8월 29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 5일제가 시행됨으로써 표준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2004년 7월 1일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정부출연기관, 1천 명 이상 사업장을 필두로 순차적으로 주 5일제가 도입되었다.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논란이 되었던 행정해석을 바로 잡아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40시간의 표준 노동시간과 초과근로 12시간을 합쳐 주 52

시간 상한제를 명문화했다.

나. 노동시간 구조

2000년 이후 횡단면 실노동시간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2020년 10인 이상 비농전산업의 경우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38.7시간이니 과거와 같은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 정도로 짧아졌어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긴 편에 속한다.

생애 실노동시간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평균연령이 높아졌다. 게다가 졸업하기 이전에도 출근했던 과거의 관행과 달리 노동시장 진입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청년들이 졸업이나 중퇴 후 첫 일자리를 잡는 데 9~11개월 정도 걸린다. 예비노동자는 직장을 잡기 위해 현재의 시간을 더 투여하게 된 것이다.<sup>6)</sup>

뒤늦게 출발해도 평생직장이 아니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20대 청년의 첫 직장 근속기간은 17~20개월에 불과하다.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

<표 1> 도시 2인 이상 노동자 가구의 가계수지 흑자율(%)

	2001	2006	2011	2016	2021
전 체	25.8	26.9	25.9	30.4	32.5
1분위	3.6	2.7	0.2	9.8	7.4
2분위	14.5	17.5	12.7	25.0	25.6
3분위	19.6	23.3	23.0	26.6	28.9
4분위	26.9	28.8	26.1	30.2	32.0
5분위	37.5	37.0	38.5	39.5	43.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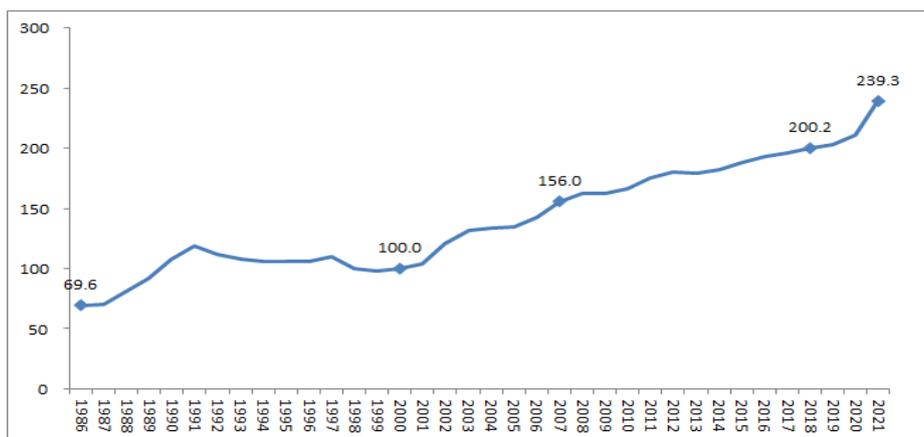
6) 입직연령이 늦춰지는 현상은 생애노동시간의 단축뿐 아니라 교육훈련 비용의 전가를 함축한다. 과거에는 기업이 관행적으로 입직 후 현장훈련을 통해 숙련을 형성하는 시간을 보장했다. 노동자는 입직 초기에 노동자로서 기업특수 숙련을 형성하는 시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입직문이 좁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이미 만들어진 인력을 요구하고 이 시간을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취업준비생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만큼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비용을 취업준비생에게 전가하고 있다. 국가가 인턴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외부로 돌릴 수 있다.

따르면 가장 오래 일한 직장에서 은퇴한 시점은 2005년부터 줄곧 49~50세로 나타난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가 정년퇴직인 경우는 525만 명 중 39만 명으로 7.5%에 그친다. 평생고용과 평생직장은 이제 박물관 전시품이 되었다.

그럼에도 일자리만 잡으면 민생고는 해결할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 가구의 가계수지 흑자율은 25~33% 정도로 나타난다. 노동자 가구는 대략 30%의 노동시간 흑자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런데 소득분위별 노동시간 흑자율의 격차는 경제위기 이후로 꾸준히 늘고 있다. 5분위 고소득층의 경우 30% 후반대에서 40%대로 올라선 반면 1분위 저소득층은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한다(표 1 참조).

필수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가격은 획일적 장시간 노동체제 시기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그림 3). 2000년 주택매매가격 지수를 100으로 놓을 때 2007년에 150, 2019년에 200을 넘었고 2021년에는 239.3에 이르렀다. 20년 사이에 2.4배가 오른 셈이다. 주택가격/소득 비율(PIR : Price to Income Ratio)이 늘었다. 소득 3분위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주택가격 3분위 집을 마련하는 데 드는 시간은 2008년 12월에는 5.2년이었는데, 2021년 12월에는 7.6년으로 늘었다. 서울은 11.9년에서 19.0년으로 바뀌었다(국민은행, 2022). 소득

(그림 3) 주택매매지수(2000년=100)



주: 2018년 12월을 100으로 처리한 지수를 2000년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연간화했음.  
자료: 국민은행(2022).

계층별 격차는 말할 필요도 없다. 집값 상승은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필수노동시간을 전반적으로 연장시키지만, 소득계층별 격차는 더욱 심해지기 마련이다.

노동시간의 예측가능성은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동안의 노동시간이 대단히 불안정해졌다. 단시간 노동이 늘었고,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정한 기간만 노동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다음 기간은 불확실하다. 종단면 노동시간도 마찬가지다. 정규직도 늦은 노동시장 진출과 이른 은퇴로 인해 안정적인 노동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일이 꾸준하지 않고 취업과 실업을 들락날락하는 경우에는 더욱 심하다. 이러다 보니 횡단면 노동시간의 합계가 곧 생애노동시간이라는 공식은 1차 노동시장에 국한되고,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 덩달아 생애노동소득도 안개 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필수노동시간은 길어졌다.

생활세계가 불안해졌다. 노동시간으로 번 돈으로 때가 되면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집을 마련하는, 판에 박힌 생애경로를 밟을 전망은 불투명하다. 안정적 삶이라는 초대장을 발급받는 사람은 소수에 그쳐 과거의 표준적 생애는 희소가치가 되었다.

## 2. 노동시간체제의 성격

### 가. 시간정치

시간정치의 지형은 21세기에 크게 달라졌다.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복지가 확장되고 있지만 노동시간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의 정체, 노동시장의 유연화, 집값의 상승, 노동시간의 불확실성은 모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노동시간을 늘릴 유인으로 작동한다. 생활수요가 늘어난 만큼 필수노동시간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이다. 변화된 상황에서 노동자가 노동시간 후자를 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임금을 높여 필수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횡단면, 종단면 실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의 정체를 포함한 노동시간의 사회경제적 기반에서 나타난 변화로 인해 모든 노동자가 필수노동시간 단축과 생애노동시간 연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이중화(dualization)라는 바이러스가 번지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노동시장에서 이중화 개념은 노동자 집단이 내부자와 외부자로 나뉘어 서로 다른 작동방식에 직면함을 뜻한다. 내부자에게는 고소득, 고용안정, 두터운 복지제도가 적용되고 외부자는 저소득, 불안정 고용,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중화 개념은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정치를 강조한다(Emmenegger et al., 2012). 정치가 움직여 같은 노동자 집단을 갈라치고 두꺼운 벽을 치게 만든다.

이중화의 논리는 노동시간의 정치에서도 파고들어 노동자 집단을 내부자, 외부자, 그리고 예비노동자로 가르고 서로 다른 논리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노동시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도, 노동시간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노동자라면 똑같다. 노동시간과 생활수요 충족의 교환관계에서 생애노동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임금을 높여 필수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득이 되는 것도 동일하다. 21세기 시간정치에서 달라진 것은 노동시간 흑자를 달성하는 방법이 집단 간 충돌을 낳고 외부자보다는 내부자의 이해를 관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내부자가 노동시간과 생활수요 충족의 교환관계에 대처할 수 있는 유력한 방식은 자본과의 교섭과 타협이다. 경제위기 이후 자본은 과거처럼 몸집불리기 보다는 실속을 차리기 시작했다. 조직을 핵심인력 중심으로 재편하고 신규채용을 자제하면서 현재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주변적인 일은 외주로 돌렸다. 자본의 신규채용 자제와 재직자 최대 활용전략은 노동시간의 안정적 확보라는 내부 노동자의 이해와 맞아떨어졌다. 기업이 재직자를 활용하려면 임금을 더 얹어 줄 필요가 있고, 이는 내부 노동자의 이해에 부합된다. 1차 노동시장의 내부 노동자와 자본이 암묵적 동맹을 형성하는 계급교차 연합(cross class coalition)이 형성되었다.

내부자의 노동조건은 외부자가 직면하는 노동시간과 생활수요 충족의 교환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 계열화 구조에서 내부자 임금이 높아질수록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 역량은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통해 필수노동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준다는 것을 뜻한다. 내부자의 이익이 외부자의 불이익을 대가로 확보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한국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은 특히

그러하다(조성재 외, 2004). 이렇게 되면 외부자는 임금인상보다는 횡단면 실노동시간을 늘려 생활을 꾸리는 과거의 방식이 유산으로 남아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논리가 여전히 관철되기 마련이다.

다른 한편, 재직자가 노동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임금이 높아지면 신규 채용의 여력도 줄어든다. 노동시장의 초과수요 상태는 노동자와 예비노동자의 잠재적 갈등을 소화할 수 있었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고용불안정을 눈으로 확인하는 청년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에 시선을 묶어둔다. 대기업은 임금, 공공부문은 고용안정성을 매력적으로 보는 것이다. 임금이 높은 대기업은 필수노동시간이 짧고, 공공부문은 생애노동시간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배분을 둘러싼 노동자 내부 간 싸움이 생겨나게 된다. 현재 노동자와 미래 노동자 사이의 세대갈등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의 은총을 입은 기성세대와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자랑하는 청년이 노동시간 배분을 놓고 단군 이래 최고조의 갈등을 빚고 있다.

획일적 장시간 노동체제에서는 ‘총노동 대 총자본’의 대립이 시간정치를 규정했다. 이제는 안정적인 노동시간 확보를 놓고 노동과 노동의 대립이 전면에 등장했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대립구도가 2차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흐르는 가운데, 생애노동시간의 분배를 놓고 노동과 노동 사이에 대립선이 보태졌다. 21세기 시간정치에서는 시간게임이 1차 방정식에서 2차, 3차 방정식으로 바뀌었다. 세 집단이 한데 얽혀 복잡하게 전개되기도 한다. 인천 국제공항공사 사례는 내부자(정규직), 외부자(비정규직), 취업준비생(미래노동자)이 한꺼번에 등장하여 복합적 시간정치의 단면을 드러냈다.

#### 나. 집합행동

전일적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집합적 인내를 가능하게 했던 세 가지 요인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노동시장 질서가 들어서면서 와해되기 시작했다. 노동시간의 동질성은 이질성으로 바뀌었다.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불평등을 관리했던 승강기는 누군가 올라가면 동시에 누군가는 내려오는 시소로 바뀌었다. 노동자 간 갈등요인은 고성장과 노동의 초과수요가 소화됐

데 이제는 갈등을 받아내는 공간이 좁아졌다. 1987년 고용체제가 잠재적으로 안고 있었던 불평등이 1997년 이후 현실적으로 나타났다(정이환, 2013).

노동자가 ‘같음’에 시선을 두면 연대하고, ‘다름’을 보면 갈라지기 마련이다. 시간정치의 이중화는 집합행동 양식의 이중화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 전체의 집합적 인내가 물러간 자리에 집단 간 상이한 집합행동의 양식이 들어섰다. 노동시간과 생활수요 충족 사이의 시간게임에 대처하는 양태는 내부자와 외부자가 서로 다르다. 내부자는 생애노동시간 확보와 임금인상 투쟁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완성차 3사 노동조합은 정년연장 입법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항목을 추가하고자 했다. 반응은 썩 좋지 않았다. 내부자의 집합적 생애노동시간 연장 투쟁은 그들만의 리그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계속고용협약의 형태로 생애노동시간 연장에 성공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임금인상이다.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일찍 내보내고 남아있는 노동자에게도 임금피크제 같은 형태로 인건비를 줄이자 내부자에게 임금인상은 더 절실했다. 내부자는 자신의 목적을 관철할 힘도 있다. 생애노동시간의 연장은 청년실업과 연결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임금교섭은 그렇지 않다. 주로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동조합은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조합원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합적으로 생애노동시간 연장과 임금인상 투쟁에 나서는 내부자와 달리 외부자는 횡단면 실노동시간을 늘려 생활수요에 대처하는 방법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외부자는 집합적 인내를 개별적 인내로 바꾸어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약한 조직력은 개별적 인내를 요구하는 요인 중 하나다. 조립형 생산에 머문 기업, 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 노동자들은 조직화도 덜 되어 있어 사용자의 의지가 강력하게 관철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실노동시간을 늘려 생활수요를 충족시키는 과거의 방식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개별적 인내가 드러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주업이 있어도 부업을 찾기도 하고 위험한 일자리를 감수하기도 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은 일하는 시간의 길고 짧음보다는 시간압박과 시간의 불규칙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낳고 있다. 라이더 노조가 결성되는 등 조

직화 흐름도 나타나고 있지만 직종의 속성은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일하는 세계에 속도가 지배하다 보니 때로는 비극적 사건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수많은 “존버씨”(김영선, 2022)에는 내부자도 있겠지만 주로 외부자임이 틀림없다. 야간노동(이정희 외, 2019) 역시 주로 외부자에게 해당될 것이다. 20세기에 지배했던 집합행동 양식이었던 집합적 인내는 개별적 인내로 바뀌어 외부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 21세기 노동시간을 규정짓는 집합행동의 양식은 내부자의 집합적 노동시간 확보 투쟁과 외부자의 개별적 인내로 갈라졌다.

#### 다. 시간배분

노동시간으로 생활을 꾸려야 하는 한국 노동자의 시간배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은 주택담보 대출 관행이다. 매매가격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내집을 마련하는 관행은 상식으로 굳어져 온전히 내 돈으로 집을 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현재의 임금소득으로 주택을 취득하던 모델에서 빚으로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하는 ‘부채기반 일부선취’ 모델로 급격하게 바뀌었다. 일상생활의 금융화(Martin, 2002)가 한국인의 삶에 깊이 침투한 것이다. 고금리를 배경으로 성립한 우연한 계급타협 체제는 깨지고 미래를 이자율만큼 깎아 현재로 끌어와 쓰는 “미래할인 관행”(강내희, 2011)이 정착되었다.

노동자가 시간을 배분하는 양식이 저축에서 부채로 급격하게 옮겨지면서 시간게임의 규칙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저축기반 내집마련 모델에서는 필수노동시간이 실노동시간의 종속변수였다. 얼마나 많이 저축하느냐에 따라 생애 필수노동시간의 양이 달라졌다. 반면에 돈을 빌려 집을 마련하는 경우 장기간에 걸쳐야 하기 때문에 대출액만큼 필수노동시간이 늘어난다. 실노동시간과 필수노동시간의 화살표 방향이 바뀌어 실노동시간이 필수노동시간의 종속변수가 되었다.

시간배분 양식의 변화는 내부자와 외부자를 가르는 또 하나의 기준선으로 작동한다. 주택담보대출 제도는 DTI, DSR 등의 형태로 상환능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 액수는 현재 소득에 따라 다르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임금노동자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보면, 소득 3천만 원 미만은 960만 원인 데 반해 1억 원 이상인 경우 6,124만 원으로 나타났다. 고임금 노동자가 변경된 시간배

〈표 2〉 임금노동자 소득구간별 주택담보대출

(단위: 만 원)

	3천 미만	3~5천	5~7천	7천~1억	1억 이상
전 체	960	1,835	3,351	4,547	6,124

자료: 통계청(2022).

분 양식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 “빚도 능력”이라는 부채격차가 현실이다(표 2 참조).

그런데 현재 노동시간과 소득의 관계는 상당히 체계적이다. 노동시간은 소득에 따라 나뉘어 상위 10~20% 고소득층의 표준시간 노동, 중간 소득 60~70%의 장시간 노동, 하위 20%의 단시간 노동으로 갈라진다(신영민·황규성, 2016). 주택담보대출이 소득과 상관관계가 깊다면 중간소득 집단인 장시간 노동자와 고소득을 올리는 표준시간 노동자가 돈을 빌릴 확률이 높다. 여기에서 내부자의 논리는 마당을 달리하여 다시 작동한다. 주택취득에 필요한 필수노동시간을 미리 당겨졌으니 이를 메우기 위해 임금을 높이거나 생애노동시간을 연장하여 미래의 노동시간을 확보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생긴다. 특히, 최근에 집값 급등에 겁을 먹고 무리해서라도 집을 산 “영끌족”은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 현재 소득도 적고 노동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은 노동자는 변경된 시간 배분의 규칙에 올라탈 여력이 크지 않다. 이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실노동시간을 통해 생활수요를 맞추어 나가는 과거의 시간배분 양식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집값이 오르면 부채격차가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격차로 전이될 수도 있다.

주택담보대출 관행은 노동시간 배분의 함수를 양분했다. 돈을 빌린 내부자는 미래를 담보 잡혀 임금을 높이고 생애노동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압박에 처한다. 장시간 노동체제의 시간배분 양식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외부자는 실노동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함에 변화가 없다. 주택담보대출 관행은 임금을 높이고 생애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내부자의 시간정치와 집합행동의 양식을 강화하여 노동시간 배분을 둘러싼 노동자 간 경쟁을 재생산하게 될 것이다.

내부자와 외부자는 모두 노동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에 직면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행태는 다양하다. 최근에는 경제적 독립성을 갖추어 일찍 은퇴하려는

이른바 FIRE족(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들은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자산을 확보하면 직장을 그만둔다는 전략을 세운다. 이 전략은 실노동시간과 필수노동시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노동시간의 함수에서 생애 필수노동시간이 “0”으로 되는 시점을 앞당기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경제적 독립 후 은퇴한다는 목표가 노동자가 일반적으로 꿈꾸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FIRE족의 계획을 특수한 행태로 보기는 어렵고, 노동시간 함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요약하면 시간정치에서는 전통적인 노동과 자본의 대립과 노동과 노동의 대립이, 집합행동에서는 내부자의 집합적 이익수호와 외부자의 개별적 인내, 시간배분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관행에 의한 노동자 내부 간 상이한 규칙이 21세기 노동시간체제의 특징으로 들어섰다. 어느 하나의 준칙이 노동자에게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준칙이 작동한다는 의미에서 노동시간체제는 분절적이다.

## V. 결 론

한국의 노동시간 연구가 장시간 노동을 넘어 야간노동이나 일터 수준의 미시적 연구로 확대·심화하고 있지만 노동시간체제의 성격은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간에 내재된 원리를 찾아 성격을 밝히고자 했다. 필요노동시간 개념을 필수노동시간으로 재해석하여 생활수요에 접맥함으로써 노동 영역에 국한할 경우 포착하기 어려운 노동시간의 근저에 흐르는 논리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 글의 핵심 주장은 한국의 노동시간체제가 시간정치, 집합행동의 논리, 시간배분 양식 등 노동시간에 내재된 준칙을 기준으로 획일적 장시간 노동체제(1960년대~1990년대 말)에서 분절적 노동시간체제(2000년대 이후)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에 내재된 작동방식의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정밀화로 그려내는 작업은 추후의 과제로 남는다. 생애 전반에 걸친 노동시간의 배분과 관련된 불평등, 산업·직종·연

령·세대·성별로 상이한 부문별 노동시간체제 등 연구를 기다리는 주제가 많다. 특히 노동시간체제에서 젠더는 따로 들여다보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과 노동시간의 관계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사람다운 노동시간(decent working time)의 한국적 개념화도 중요한 숙제다. ILO가 제기한 이 개념은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 향후 노동시간 논의에서 준거점을 이룰 사람다운 노동시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동시간의 사회적 배분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횡단면 노동시간과 생애노동시간의 고른 배분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다운 노동시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시간의 사회적 배분은 중요한 연구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간의 사회적 배분에 관한 논의로부터 모두가 일할 수 있도록 더 짧게, 더 적게 일하는 사회(Gorz, 1989)를 향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의 분석으로는 현재 한국 노동시간의 지형은 맑지 않다. 집단별로 상이한 노동시간 준칙이 작동하여 노동시간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시간 가난뱅이가 되기를 원하는 사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노동시간 연장의 유인이 거세질 것 같다. 필수노동시간을 연장하는 요인의 힘이 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쉽지 않겠지만 모두가 짧게 일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차원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세상사는 게 여유롭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나오는, 살맛나는 세상을 상상해본다.

## 참고문헌

- 강내희(2011). 「시간의 경제와 문화사회론」. 『마르크스주의 연구』 8(4): 196~225.  
 강성태(2017). 「휴일 제도의 개선방안」. 『법과사회』 54: 211~239.  
 강수돌(2013). 「장시간 노동체제, 문제의 뿌리와 극복의 전망」. 『노동사회』 159호.

- 구해근(2002[2001]). 신광영 옮김.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비.
- 국토연구원(2022). 「2030 미혼 청년의 주거여건과 주거인식」. 『국토이슈리포트』 58.
- 김도균(2018).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서울대출판문화원.
- 김영선(2022). 『존버씨의 죽음』. 오월의봄.
- 노중기(2012).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의미」. 『경제와사회』 96 : 178~209.
- 류동민(2018). 『시간은 어떻게 돈이 되었는가?』. 휴먼경제경영.
- 박제성 · 강성태 · 김홍영 · 도재형 · 박귀천 · 이철수 · 최석환 · 배규식(2011).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 한국노동연구원.
- 배규식(2012).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요인」. 『경제와사회』 95 : 128~162.
- 신영민 · 황규성(2016). 「한국의 노동시간 계층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3 (3) : 17~47.
- 윤진호(2011).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성장」. 유종일 엮음. 『박정희의 맨 얼굴』. 시사HN북. pp.227~278.
- 이근희(1988). 『장시간노동의 원인규명 및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연구』. 생산성본부.
- 이정희 · 박제성 · 박종식 · 이승렬(2019). 『서비스업 야간노동』. 노동연구원.
- 장세훈(2007). 「주택소유의 관점에 입각한 중산층의 재해석」. 『경제와사회』 74.
- 정이환(2013). 『한국 고용체제론』 후마니타스.
- 정준호(2017). 「이중화의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 『시민과세계』 31호.
- 조성재 · 이병훈 · 홍장표 · 임상훈 · 김용현(2004). 『자동차산업의 도급구조와 고용관계의 계층성』. 노동연구원.
- 통계청(2022).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 임금근로자 부채」. 보도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21). 『2021 KLI 노동통계』.
- 홍장표(2016). 「소득주도 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이병천 · 유철규 · 전창환 · 정준호 엮음.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돌베개. pp.112~154.
- 국민은행(2022). 월간시계열(KB 부동산 통계)

<https://kbland.kr/webview.html#/main/statistics?blank=true>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령자 부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8S&vw\\_cd=MT\\_ZTITLE&list\\_id=B1A\\_18&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8S&vw_cd=MT_ZTITLE&list_id=B1A_18&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8S&vw\\_cd=MT\\_ZTITLE&list\\_id=B1A\\_18&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8S&vw_cd=MT_ZTITLE&list_id=B1A_18&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한국은행 국민계정. <https://ecos.bok.or.kr>

Anxo, D., C. Fagan, I. Cebrian, and G. Moreno(2007). “Patterns of Labour Market Integration in Europe”. *Socio-Economic Review* 5 : 233~260.

Beck, U.(1986). *Risiko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 Suhrkamp.

Emmenegger, P., S. Häusermann, B. Palier, and M. Seeleib-Kaiser(2012). “How We Grow Unequal”. P. Emmenegger et al. eds. *The Age of Dualization*. Oxford Univesity Press. pp.3~26.

Fagan, C.(2004). “Gender and Working Time in Industrialized Countries”. Jon Messenger eds. *Working Time and Workers’ Preferenc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London : Routledge. pp.108~146.

Figart, D. and E. Mutari(2000). “Working Time Regime in Europe : Can Flexibility and Equity Co-exist?”. *Journal of Economic Issues* 34 (4) : 847~871.

Fligstein, N. and R. Calder(2015). “Architecture of Markets”. R. Scott & S.

- Kosslyn eds. *Emerging Trends in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John Wiley & Sons. pp.1~14.
- Fudge, J.(2011). “Working-Time Regimes, Flexibility, and Work-Life Balance”. C. Krull & J. Sempruch, eds. *Demystifying The Family/Work Conflict*,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pp.170~193.
- Gorz, A.(1989). *Critique of Economic Reason*. New York : Verso.
- Lee, Sangheon(2004). “Working-hours Gaps : Trends and Issues”. J. Messenger ed. *Working Time and Workers’ Preferenc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London: Routledge. pp.29~59.
- Lütz, S. and R. Czada(2000). “Einleitung”. R. Czada & S. Lütz eds. *Die Politische Konstitution von Märkten*. 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pp.9~35.
- Martin, R.(2002). *Financialization of Daily Life*. Philadelphia : Temple University Press.
- Marx, K.(1867). *Das Kapital*. Erster Band. Berlin : Dietz Verlag.
- Olson, M.(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Harvard University Press.
- Postone, M.(1993). *Time, Labour and Social Domin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bery, J., M. Smith, and C. Fagan(1998). “National Working-Time Regimes and Equal Opportunities”. *Feminist Economics* 4 (1) : 71~101.
- Rueschemeyer, D. and T. Skocpol(1996). “Conclusion”. D. Rueschemeyer & T. Skocpol eds. *States, Social Knowledge, and the Origines of Modern Social Policie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pp.296~312.
- Scharf, G.(1988). “Zeit und Kapitalismus”. R. Zoll ed. *Zerstörung und Wiederaneignung von Zeit*. Frankfurt : Suhrkamp. pp.143~159.
- Schelsky, H.(1965). *Auf der Suche nach Wirklichkeit*. Düsseldorf : Diederichs.
- Schmid, G.(2010). “Von der aktiven zur lebenslauforientierten Arbeitsmarktpolitik”. G. Naegele ed. *Soziale Lebenslaufpolitik*. Wiesbaden : VS Verlag.

pp.333~351.

Schor, J.(1992). *The Overworked American-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New York : Basic Books.

Shippen, N.(2014). *Decolonizing Time. Work, Leisure, and Freedom*. New  
York : Palgrave Macmillan.

Abstract

---

## Changes in Working Time Regime in Korea

Hwang, Gyu Seong

Working time regime in Korea has transformed from omnipresent long-time working regime(1960~1990s) to a segmented regime(since 2000s) in respect of the rules inherent in working hours, such as time politics, logic of collective action, and time allocation patterns. The former is characterized by time politics forming contradiction of total labor and capital, collective patience as a norm for workers, savings as a rule for distributing working hours. In the 21st century, the logic of dualization penetrated the rules of working time. In time politics, the confrontation between labor and labor over the distribution of lifetime working hours has come to the fore, creating conflicts between insiders and outsiders, present and future workers. While insiders fight for a wage increase and extension of lifetime working hours which could reduce necessary working hours for them, outsiders adopt individual patience as their mode of action to increase actual working hours. Debt-based house buying model, which draws future working hours into the present, reinforces the insider-outsider division. The segmented working time regime suggests that there is a serious problem in the social distribution of working time. The working time regime should be reorganized to realize decent working hours evenly.

Keywords : work hours, working time regime, dualization